

청주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나56228 판결 [소유권보존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나56228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574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김한설

피고, 피항소인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윤경식

변론 종결 2024. 5. 24.

판결 선고 2024. 7. 12.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5745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 E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순번에 따라 '제0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3. 1. 28. 접수 제1432호로 마친 2012. 9.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02. 10. 31. 접수 제13917호로 마친 2002.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제1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980. 7. 19. 접수 제818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제2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980. 10. 17. 접수 제1121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제3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980. 10. 17. 접수 제1121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8행의 "아니하였다." 다음에 "N은 제1심 법정에서 '제1, 2, 3 토지는 큰아들인 망 J의 소유인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 내용만으로 망 F이 망 J에게 제1, 2,

3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N의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아래 4. 나. ②, ③항에서 보듯이 '이 사건 각 보존등기가 망 F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따라 마쳐졌고, 이 사건 각 이전등기가 망 J의 매도에 따라 마쳐졌다'는 것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2행, 7쪽 1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2행의 "증언을 하였다"를 "증언을 하였는바, 위 증인은 망 F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의 경위, 내용, 이 사건 각 보존등기 및 각 이전등기의 경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5행의 "원고들은," 다음에 "망 J가 채권자 Q 등에게 본인의 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미리

판사박성준

판사이효선

별지